

의안번호	제 11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8년 8월 28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

제출연월일 : 2018년 8월 2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영 제31조의2)와 혁신도시발전위원회(영 제32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4조~제8조)
-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 및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명칭은 “충청북도 이 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② 협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협의회는 위원장을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협의회는 위원장이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에 따라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4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와 위원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협의회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 등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등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한다.

관 계 법 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에 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위원장 1명(제31조제1항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시·도지사이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①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6.>

②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5.28., 2017.12.26.>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내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6.>

- ④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의 장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17.12.26.>
- ⑤ 위원장은 시·도지사과 민간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⑥ 그 밖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
 3. 이전공공기관의 장 1명 이상
 4. 그 밖의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의 장별로 각각 1명 이상
- ②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시·도가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